##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준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68 발의연월일: 2024. 9. 25.

발 의 자: 박준태·조지연·고동진

구자근 · 김승수 · 조배숙

김장겸 · 강승규 · 송석준

안상훈 · 장동혁 · 곽규택

김상욱 • 이헌승 의원

(14위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, 경력,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소년범죄의 처리절차가 가해자인 범죄피의자 중심으로 이루 어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 찰의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에"를 "제3항에"로 한다.

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소년피해자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9조의2(검사의 결정 전 조사)	제49조의2(검사의 결정 전 조사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		
	면 소년피해자의 동의를 받아		
	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소년		
	피해자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		
	<u>다.</u>		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		
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	<u>④</u> 제3항에		
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			
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			
야 하고,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			
인권을 존중하며, 직무상 비밀			
을 엄수하여야 한다.			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		